

의안번호	제 29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9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기구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<기구명칭 변경>

- 특화작목시험장 명칭변경(안 제25조, 별표 1)
 - 곤충종자산업연구소 → 곤충연구소
 - 포도다래연구소 → 포도연구소
 - 마늘양파연구소 → 마늘연구소
 - 수박딸기연구소 → 수박연구소
 - 대추호두연구소 → 대추연구소

<분장사무 조정>

-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,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
: 과학인재국 → 기획관리실
-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: 행정국 → 기획관리실
- 과학인재국: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
→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

5의2.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,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

제8조제13호를 삭제한다.

제8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 연계 협력 사업 총괄

제13조의2제17호를 삭제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곤충종자산업연구소, 포도다래연구소, 마늘양파연구소, 수박딸기연구소, 대추호두연구소”를 “곤충연구소, 포도연구소, 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연구소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 중 “곤충종자보급연구소”를 “곤충연구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곤충종자산업연구소”를 “곤충연구소”로 한다.

②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“과학인재국장”을 “기획관리실장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(제25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
곤충연구소	청주시 관내
포도연구소	옥천군 관내
마늘연구소	단양군 관내
수박연구소	음성군 관내
대추연구소	보은군 관내
와인연구소	영동군 관내
유기농업연구소	괴산군 관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기획관리실) 기획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·2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삭 제</p> <p>4.·5.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6. ~ 14. (생 략)</p>	<p>제6조(기획관리실)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·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5의2.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,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</u></p> <p>6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과학인재국) 과학인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9. (생 략)</p> <p>10. ~ 12. 삭 제</p> <p><u>13. 청년대책 및 청년일자리, 청년복지 정책 추진 총괄</u></p> <p><u>14. 교육 관련 업무의 총괄·조정</u></p> <p>15. (생 략)</p>	<p>제8조(과학인재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14. 교육 관련 업무 및 지산학연계 협력 사업 총괄</u>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의2(행정국)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p> <p>1. ~ 15. (생 략)</p> <p>16. 삭 제</p> <p><u>17. 광역조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8. (생 략)</p>	<p>제13조의2(행정국) ----- -----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1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생</p>	<p>제25조(특화작목시험장) ① (현행</p>

략)

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
장으로 곤충종자산업연구소, 포
도다래연구소, 마늘양파연구소,
수박딸기연구소, 대추호두연구
소, 와인연구소, 유기농업연구
소를 둔다.

③ (생략)

과 같음)

② -----
---- 곤충연구소, 포도연구소,
마늘연구소, 수박연구소, 대추
연구소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- 제125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⑥ (생략)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- 제9조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도 본청에 두는 실·국·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실·국·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·국·본부의 개편,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- 제9조의2 (시·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) ① 시·도는 별표 1에 따른 시·도의 실·국·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실·국·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·국·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③ ~ ⑤ (생략)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도정혁신과 더 살기 좋은 충북프로젝트 조기 실현을 위한 기구 조정내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
○ 작성자

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